

제434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3일(목)

장 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88)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7)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2)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0)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4)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0)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65)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0)
11.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12.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1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14.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상정된 안건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68)	2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488)	3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947)	3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42)	3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7500)	3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528)	3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634)	3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8250)	3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8465)	3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80)	3
11.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3
12.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3
1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3
14.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3

(10시14분 개의)

○소위원장 박지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5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21106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488)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947)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242)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500)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528)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34)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250)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465)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580)
 11.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2)
 12.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5)
 1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40)
 14.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6)

(10시15분)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저희가 지난 법안소위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조항별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고 심사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소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제가 조금 이따 이석을 해야 돼서 우리 법안소위와 기후위기특위 운영에 대해서 한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일단 시한이 5월 말까지이지 않습니까, 기후위기특위가? 그런데 지금 법안이 제정법 하나, 개정안 하나 이렇게 상당히 입장 차가 매우 큰, 쟁점이 많은 법안들을 정부 의견 듣는 단계인데, 조금 있으면 바로 또 지방선거에 다들 얹매이게 될 텐데 그러면 실질적

으로 우리 법안소위나 전체 기후위기특위의 활동시한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회의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탄소중립기본법의 경우는 이게 헌법불합치 상태고 이미 시효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법이 무효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시급한데 과연 5월 말까지 시한 내에 합의가 되고 처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미룰 수 없다고 보는데, 논의 순서도 이 부분을 조금 우선시켰으면 좋겠고, 내용적으로도 보면 이미 헌법불합치한 내용들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국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거쳤는데 공론화 중에서 이미 나온 내용도 있고 IPCC의 권고안도 있고, 기왕에 정부에서 NDC 35년 목표를 53%에서 61%로 이렇게 어쨌든 레인지(range)를 뒤서 일단 정부안은 제출이 된 상태고 이런 것들이 여기 법안에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비용추계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료제출이 늦었거나 미흡한 상황이고, 전체적인 제한된 시간을 염두에 둔다면 논의가 되게 느려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강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면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지금 무효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법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도를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정 관리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래서 지금 위원님 의견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입법 공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실까요?

○김정호 위원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가능하지 않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일정 조정을 할 거냐 그런 얘기가 좀 돼야…… 뻔히 보이는데 그걸 그냥 묵과하고 얘기만 계속하다가 말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사실 저희도 그런 걱정이 있어서 오늘 의사일정을 정할 때 탄소중립기본법을 먼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요. 혹시 이 쟁점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존경하는 저희 기노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부 동의는 하는 부분이 어떤 지점이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2024년에 받고 2026년 6월까지 하라는 가이드는 줬지만 저희가 이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 정부의 자료도 충분치 않고 그리고 부처별 감축경로에 대한 의견도 좀 있고 그리고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의 생각도 좀 다양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논의를 시작한 지, 지난주에 논의를 시작했고 이제 두 번째 논의라서…… 그런데 기후특위의 일정 활동은 5월 말까지고 이 사이에서 결정을 좀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헌법불합치에 대한 논의는 빨리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2035년까지의 NDC 목표는 이미 돼 있고요. 헌법불합치에서 제시한 31년부터 49년까지에 대한 감축경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숙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특위 활동에 쫓겨 가지고, 마감 시간에 쫓겨 가지고 저희가 논의할 부분을 논의하지 않고 마감 시간에 맞추느라고 이 일정을 막 돌린다? 그거는 나중에 국회의원,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 측에도 대단히 큰 짐을 지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누가 이렇게 결정했어, 왜 이렇게 결정했어? 자료도 없는데 이런 결정이 어떻게 나온 거야? 마감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야?’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를 환경 쪽으로 가져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만들어졌잖아요. 원래는 에너지랑 환경이 분리돼 있어 가지고 저희 특위 활동이 시작된 지점도 있지만 다 통합이 된 그런 부처가 만들어졌으니까 저희는 기후노동위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무한정 저희가 기한을 2035년까지 논의하고 2031년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의 산업경쟁력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주는지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보여 주는 바로미터가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우리 당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다 합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너무 급격하게 몰아붙일 때 발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았을 때 이게 과연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우리가 다른 걸 놓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실은 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 우려에 대한 해소를 하지 않으면서 마감 시간을 지킨다? 기후특위 활동의 마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거는 저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는 하되 이게 어려우면 기후노동위라는 대단히 중요한 상임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정책위 의장님도 그렇고 원내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부분이니깐 연금특위처럼 원내대표 간의 협의도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일정의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저희가 22대 국회 시작하기도 전에 5월에 당선된 모든 정당의 당선자들이 모여서, 그때는 여야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의 당선자들이 모여 가지고 기후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 자체가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제대로 된 탄소중립기본법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문성 있고 진정성 있게 이 문제에 집중하는 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렵게 이 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후특위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 탄소중립기본법, 오늘 논의하는 이 개정안을 전문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였고요. 아마 그 부분은 모두가 지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대로 집중적으로 심사해서 진정성 있고 전문성 있게 판단하고자 만든 특위인데 이 특위에서 이 일을 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일반 상임위로 넘긴다라고 하는 거는 특위를 우리가, 모든 8개의 정당이 다 같이 모여서 기자회견 하면서 특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취지에도 어긋나고 그러면 기후특위 1년 동안 뭐 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감 시한이 저희 기후특위가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더 집중해서 논의하고 제대로 결론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위에서 논의된 거는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결정이 이루어진 게 1년 8개월 전이 고요. 또 작년에 2035년 NDC 논의를 하면서 중장기 감축목표에 대해서 사실 여야 간에 많은 주장과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지금 시작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우리 기후특위가 사라지기 전에, 해산되기 전에 이 문제는, 이 숙제는 해결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기,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한 발짝씩 진전시켜 놓지 않으면 시간을 유보한다고 그래서 진전이 안 되더라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18년 이후로 우리가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또 2030년 감축목표를 굉장히 제한된 분석과 여건 속에서 결정을 했지만 그나마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실질적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정책들이 준비될 수 있었고 반 발짝이라도 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꽤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 다음 단계의 목표를 정하고 감축 수단과 정책들을 마련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진했고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반드시 지키거나 피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가지고 유보하고 완화하고 약화시키는 그런 기조들을 계속 가졌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게 더 심해지는 결과에 따라서 훨씬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계기가 있었을 때 반드시, 어렵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점진적이고 적극적인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정책, 수단과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확립해 나가면서 그 결과와 경험을 축적시켜서 한 발짝이라도 갈 수 있는 거지 당장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 또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고 완벽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이유, 이것 가지고 유보하고 유보하고 했던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OECD 선진국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탄소중립과 관련된 산업 발전을 시키는 데 뒤떨어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후특위 만들어서 좀 더 통합적이고 좀 더 선도적인 방향과 정책들을, 제도들을 만들자고 결의했던 기후특위가 마감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한 발짝이라도 진전시키는 하나의 결론들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과거의 실패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놓고 필요한 정책이나 수단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찾는 그런 노력들을 경주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까지 탄소중립과 관련된 경험과 실패들을 고려했을 때 훨씬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현승 위원님.

○李憲昇 위원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서로 합의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법안이 준비가 되는데 저희들도 여기 조문별로 서로서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서로 다른 부분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같은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 나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결론

을박이 계속되니까 그런 부분은 소위의 간사님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여서 주로 지방에 많이 있어야 되니까, 일부러 특위 때문에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조문별 검토부터 저희들이 끝내고 어떤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지 그것을 체크해 가지고 협상을 하시고 또 두 분이 안 되면 좀 더 하이 레벨에서 조정이 되면 우리 특위에서 충분히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덧붙이면 이 법안들이 전부 다 의원입법이거든요. 사실은 이것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정부에서 정부입법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내고 이러면 진도가 더 빠를 텐데 사실 정부안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부에서 너무 소극적인데 정말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려면 정부안을 가지고, 정부안을 내놓으면 논의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께서 정부 측에 촉구를 하셔서 가지고 정부의 단일된 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이 쟁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현승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하신 것처럼 특위의 임무가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던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고, 관련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현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저희 특위 안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 심사를 촉진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말씀 잘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 감안해서 정부안을 빠르게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 법안 심사를……

○조지연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소위원장 박지혜 예.

○조지연 위원 정부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정부안 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안 마련이 가능한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최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는 일차적으로 했고요. 추가적으로 논의를 계속 이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정부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그렇게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이호현 차관님 오셨고요. 산업통상부에서는 박동일 산업정책실장님 오셨고요. 재정경제부에서는 민경설 혁신성장실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처 천재호 성장기획정책관님 오셨고 기후대응위원회 홍동곤 사무차장님 오셨습니다.

정부 관계자분들이 배석해 계시니까요 법안 심사 과정에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4페이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한 조문부터 수석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4쪽에 있는 각 쟁점별로 하나씩 짚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먼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전 지구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할 것. 둘째,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 이 내용들은 개정안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만 특히 세 번째,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탄소예산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은 서왕진 의원님 안이 추가적으로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검토의견에서는 조문 위치가 의원님 개정안에 따라서 3조 내지는 8조로 각각 위치가 다른데요. 우측 검토의견을 보시면 제8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해당 사항은 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감축목표 설정 관련 조항에 현재 결정 취지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 지구적 관점에서 기여할 몫,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것,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서 산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도 동의합니다. 다만 탄소예산을 명시적으로 감축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왕진 위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사실은 이게 3조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8조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는 그냥 판단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구요.

내용과 관련해서 1·2·3의 기본은 현재 판결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수치를 법안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이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현재 판결에서 명시했다는 점 이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세 번째,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의 근거의 기본 틀은 IPCC의 분석을 기본으로 할 것이고 그것을 각 국가에서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국가적 판단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IPCC가 제시하고 있는 기본 방향 자체를 우리가 훼손하거나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고요.

문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때 IPCC가 탄소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확정해 가지고 국제적인 기준으로서 그것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IPCC가 실제로 그런 목표나 수치들을 정할 때 탄소예산과 같은 기본적인 원리를 적용하고 분석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작업을 한다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 현실에 근거해서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려우니까 이 정도 하자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양적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탄소예산이라고 하는 원리 자체를 우리도 발전시켜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적극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좀 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차원에서 탄소예산이라고 하는 개념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저는 그 근거를 담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헌승 위원님.

○李憲昇 위원 서왕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본인 법안에 담아내셨고 또 금방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부 측과 서로 의견이 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각자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로 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 해 가지고 쟁점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 회의 할 때 좀 더 축약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알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저는 서왕진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진행 관련 의견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1번 관련해서는 1·2·3번 중에 1번·2번에 대해서는 정부나 저희 위원들 간에 이견이 없고 3번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이견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이종배 위원 아니, 3번에 대해서는 위원들 의견을 다 안 들어 봤잖아요.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李憲昇 위원 저는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했고 다른 분들……

○이종배 위원 기획예산처 나오셨지요? 기획예산처 누가 나오셨지요?

○기획예산처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성장기획정책관입니다.

○이종배 위원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이소영 위원 이 조항의 1번 쟁점에 대해서요?

○이종배 위원 이 의견을 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처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기후부차관이 이미 말씀드린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1항·2항은 기획예산처도 이견이 있지는 않고요. 3항에 대해서 탄소예산이라는 게 실제 국제기구에서 아직 방법론이나 이런 게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입법에 반영할지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기획예산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 탄소예산이라는 게 법적 용어도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은 용어인데 이것을 우리 법에다가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지, 우리 위원회에서 탄소예산을 법에 넣자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런 용어를 우리 법에다 넣는 것은 상당히 부담된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아까 모두에도 서로 얘기를 했지만 기후위기특위를 만든 것은 현재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이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큰 방향

에서도 그렇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준하는 기구인데 우리로서는 여기서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될 그럴 위치의, 위상의 기구이지 이미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국제기준이 없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전체가 다 새로운 길이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지구적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일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전에 없었던 파리협정, 그런데도 각국이 목표를 정하고 가자고 하는 것도 최초의 일이고 그리고 기준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도 문제로 지적한 것은 탄소예산의 부재이지 도입 자체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유념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EU라든지 영국 이런 주요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예산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 안에서 이것도 반영하지 못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탄소 기본법을 하는 취지 자체가 아주 무색하게 되는 거라 현재의 미래세대에 대한 판결을 우리가 너무 무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기준 그것을 목표로 세우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꼭 유념하고 전제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기준이 애매한 이런 용어를 넣어 가지고 탄소예산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이것을 이 법에다 넣어서 앞으로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그냥 법에다 이런 용어를 넣어 놓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뒤에도 사실 탄소예산 관련한 규정이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염태영 위원님 말씀 듣고 조금 보태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면, 현재에서 탄소예산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탄소예산의 개념을 가지고 위헌이다 아니다 판정하는 데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정부에서 잘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현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고 여기 법안 검토의견에 적어 놓으셨는데 현재가 판결한 취지는 탄소예산이라는 개념도 있고 어느 정도 국가별 배분에 대한 방법론도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예산을 규범적으로 정의하지도 않았고 국가기관이 산출한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헌법불합치결정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 탄소예산의 개념이라는 것이 정말 백 사람이 다 백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규범적으로 정의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에서 저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기후특위 할 때마다 탄소예산 얘기를 했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국가기관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탄소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독일은 헌법 불합치결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에 그 위헌판결이 난 다음에 스위스 정부가 새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EU의 인권재판소 결정이었거든

요. 인권재판소 결정의 이행 여부를 유럽평의회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심사 과정에서 스위스 정부가 국가 탄소예산을 도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정 이행이 불충분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나름의 방법론으로 탄소예산을 산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기후 목표를 정하도록 하는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EU, 유럽 기후법에도 기후 목표를 정할 때 탄소예산을 어떻게 산출해서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를 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정부가 살펴보셔야 된다, 살펴보시지 않고 계속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하시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제가 법안소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비판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기재부 말씀도 잘 들었는데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긴장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배터리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2021년에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85%일 때 우리나라는 33%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은 우리나라 제품이,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우리나라 것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당시에, 2021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시장은 중국이 85%를 이미 과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 정책의 변화나 또 중국 기술의 발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였겠지만 지금 5%로 떨어졌어요.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배터리 시장 자체가 다 망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배터리 시장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자 그러면 기재부는 ‘저희가 특정 산업에 이렇게 돈을 많이 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했냐? 물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나라의 국가 운영 체계가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주석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석유,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페트로스테이트였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중국이 일어서질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당대회에서 일렉트로스테이트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고 10년 동안 줄기차게 추진해 온 것 아닙니까, 대학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이끌고 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산업이 발전 속도를 내면서 우리가 앞서던 분야들을 중국이 다 따라잡은 것이잖아요. 지금 탄소예산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산업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풀어 주고 저것도 규제를 안 하고 좀 더 시간을 두자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뉘 놓고 있는 사이에, 정당과 정부가 다 뉘 놓고 있는 사이에 중국한테 시장을 다 뺏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태양광을 늘리자라고 하니까 태양광을 늘리면 중국이 돈 버는 것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이 돈을 못 벌게 하려면 우리가 태양광에너지 산업, 배터리 산업 그리고 모듈 이런 것들을 국산화하고 자꾸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키워서 그 시장을 장악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뉘 놓고 시장 뺏긴 다음에 시장 뺏겼으니까 우리가 물건 팔아 주면 중국이 돈 번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게 저는 지금 탄소예산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지금 올해 안 하고 10년 있다가 재생에너지 시장을 중국이 다 장악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기재부는 ‘탄소예산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으니깐 이것 못 만들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냥 오늘만 보지 마시고 정부도 내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밀려오는 중국 시장으로부터 어떻게 대한민국 산업을 보호할 것인지 이제 좀 고민하셔야 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와 관련한 의견이신 것이지요?

○서왕진 위원 먼저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지혜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일단 탄소예산 관련해서는 국가가 만들겠다고 하는 기후과학원 이런 데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추후에 2035년, 2040년, 2045년 결정할 때 백데이터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법에서까지 언급하면서 저희가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도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 개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국가를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나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이 부분이 탄소다배출 산업이고, 저희가 그러면 이것 대신에 재생에너지로 가고 금융으로 가고 농업으로 가고 관광으로 갑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하자라고 논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마저 중국한테 경쟁력을 빼앗기면 저희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어느 나라가 이 탄소예산을 도입해 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은 저희랑 산업 구조가 비슷한 나라랑 비교한다 그러면 저희는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이런 내용들을 법조문 안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탄소예산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만 가치판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기획예산처 의견을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서왕진 위원님.

○서왕진 위원 우선 산업 보호 등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실은 기후 문제 논의할 때부터 처음부터 항상 쟁점이 돼 왔고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항상 산업 보호 논리 우선으로 모든 결정들을 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우리 제조업 중심의 산업 체계의 어려움 또 거기에 과도한 부담을 지웠을 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해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를 받았던 철강, 석유화학 이런 산업들이 잘 보호가 돼서 경쟁력이 높아졌습니까? 지금 그것을 마치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거기에 국가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산과 재정을 지원하고 정책을 지원해서 선도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거의 국제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우리 산업과 제조업을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더 국제적으로 경

쟁력 있는 분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 자체는 동일한데 그 방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자체가 과연 성공했는가, 올발랐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성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탄소예산과 관련해서 탄소예산이라는 것을 너무 무슨 대단하고 위험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후 문제에 대응할 때 가장 큰 원칙은 지구적으로 1.5℃를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대원칙 아닙니까? 그것도 부정하면 논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5℃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이 얼마인데 1.5℃까지 가는 데 얼마가 남아 있느냐 이게 일차적인 기본 원리입니다. IPCC도 목표를 정하고 전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얼마만큼씩 그것을 감축해야 되느냐라는 원칙을 정할 때 탄소 버짓(budget)이라고 하는 총량을 설정해 놓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몇 년도까지 제한하지 않으면 1.5℃를 넘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에 얼마씩을 감축을 해야 된다는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파리협정 체제 속에서 각 국가별로 동일 기준으로 그것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개별 국가적 기준이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개별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고 뭔가 목표 숫자를 정하려면 그 국가 나름의 탄소 버짓을 생각하고 국제적인 기여도나 이런 원칙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정량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기본이고 고려하되 최종적인 수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른 요소들까지 포함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법률에다 도입하면 마치 그것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무슨 기준을 절대적으로 높여야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내용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고 원칙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염태영 위원님까지 듣고……

○염태영 위원 지금 서왕진 위원님 의견 제가 동의하고요. 실제로 이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이 NDC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지난번에 국가 목표를 정부안으로서는 협의를 끝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 법안에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이냐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예산을 그에 상응하게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핵심인데, 그 핵심이 빠진 가운데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면 도대체 왜 만드느지를 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은 탄소예산을 적어도 이 법의 근거 안에 담아 두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야당과 정부 측 입장이 같고 여당의 의견이 갈리는 식으로 구도가 짜이는 게 참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을 텐데 정부에게 늘 아쉬운 것은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영역 속에 담아서 이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정부 자세여야지 정부는 늘 수세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그때마다 이유를 산업계의 현실적 형편을 반영해서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될 우리 선도적 기업들의 형편들을 너무 위축시키거나 저자세로 만드는 것이어서 이런 자세를 하루빨리 바꾸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이후에 국제사

회의 책임 있는 일원도 되기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무역장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저는 정말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탄소중립기본법만이 아니라 스코프(scope)와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의 여러 가지 법적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정부가 이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정부가 그런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후위기특위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李憲昇 위원** 금방 위원님께서 여야가 같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입니다. 저는 분명히 찬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위원장 박지혜** 서왕진 위원님도 야당입니다.

○**李憲昇 위원** 너무 이분법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표현이 잘못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여야가 같린다 이런 얘기는 좀 잘못됐던 것 같고.

이 법안을 내신 여러 여당 의원님들도 탄소예산에 대해서 언급하신 위원님들 어떤 분 계세요?

이소영 위원님, 여기 법안 내용에 탄소예산 반영시키셨어요?

○**소위원장 박지혜** 서왕진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저는 탄소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위치가 8조 1항이 아니라 뒤의 규정에 언급하는 것으로 반영을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종배 위원** 또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여야로 이렇게 가를 필요는 없고요. 탄소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개념이 정립이 되면 나중에라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오래 이것 가지고 논의할 필요는 없다, 보류를 하시든지 아니면……

○**소위원장 박지혜** 저는 다양한 의견을 일단 한 번은 들어야 되니까 의견을 여쭙고요.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다른 의견을……

○**이종배 위원** 이 탄소예산 가지고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소위원장 박지혜** 그런데 중요한 쟁점이기도 해서……

다른 의견 내실 분 없으면, 사실 지금 기본원칙과 관련해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설정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해야 한다, 미래에 과중한 부담 이전을 금지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탄소예산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논의되는 의견들을 잘 감안하셔서 정부안 마련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면 5페이지의 5년 단위 중장기감축목표 설정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두 번째 쟁점 5페이지입니다.

5년 단위의 NDC와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공통적인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30년부터 45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사항으로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소희 의원님 안은 선형감축경로 비율에 따른 수준으로 감축하되 감축 수단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비율 하향 조정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종배 의원님 안이 발의돼서 직회부로 회부돼서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역시 선형감축경로 또는 그 이하의 비율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고려사항으로서는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이사항으로 서왕진 의원님은 목표 설정 시에 탄소예산 고려하도록 하면서 탄소예산을 5년마다 산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배출량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의 표를 보시면 맨 왼쪽은 현재 국가가 설정해 놓은 국가NDC 35년까지의 목표치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IPCC 경로 그다음에 선형경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른쪽부터는 각 의원님들의 수치입니다. 30년 목표치도 정혜경 의원님 안, 서왕진 의원님 안은 제시되어 있고 나머지 의원님들 안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과 동일합니다.

35년 목표치에 대해서는 정부는 53~61 사이지만 의원님들은 최소 55부터 65까지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목표치도 보면 70~85까지 그 사이에 분포가 돼 있고요. 45년은 85부터 95까지 각각 분포가 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개정안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개정안도 각각 있다라고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되겠고요. 앞선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미 순배출량으로 기개정되었다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앞서 제시했던 중장기감축목표 설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감안해서 현재 결정이라든지 IPCC 권고 그다음에 공론화 결과 등을 종합해서 일정 정도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일정 정도의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들, 정책적인 유연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처의 의견이 있어서 정부 단일 의견은 제시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 부처 의견들 다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지금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지혜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부처 간에 조율하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후부차관님께서 정책적 불확실성이나 유연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타 부처의 의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세요.

○산업통상부산업정책실장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계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의견을 나눴고요. 전체적으로 산업계에서는 2035년 NDC가 53~61%로 정해졌기 때문에 35년 목표에 대해서는 53%로 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35년부터 50년까지 장기적인 감축경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나 그

다음에 산업계가 현실적으로 가진 부담들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선형경로 수준으로 해 주기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 민경설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선형경로와 관련해서 2035년까지 NDC 목표에 대해서는 이미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산자부에서도 얘기했는데 특히 재정경제부 차원에서도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 환경이라든지 그 변화에 조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선형경로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법률에 수치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저희 차원에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서 다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지 않겠느냐, 탄력적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이게 완화하는 쪽으로만 말씀드리는데 것은 아니고요. 모두 상황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기술 발전이라든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상하방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한 단서 조항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재정경제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예산처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입니다.

재경부 입장과 조금 비슷한데요. 35년은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입장이 동일한 거고요. 40년부터는 저희가 글로벌 환경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책적 유연성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법률에서 숫자를 박아야 된다면 선형 숫자를 넣고 일정 부분 위아래를 터서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박아서 이게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유연성을 주십시오 하는 게 기획예산처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 조지연입니다.

이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중장기감축목표가 있고 오목이나 선형이나 볼록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저는 사실 많은 자료를 부처로부터 받았지만 기후부로부터도 책임 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분석 자체가 곤란하다 그리고 구체적 분석은 곤란하다. 감축목표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들,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들 이런 것들을 분석한 근거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부처에서도 준비가 전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것을 감축하지 말자 이런 주의가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선언적으로 저희가 법률에 명시하고자 지금 이 논의를 이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언적으로 저희가 수치를 법률에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실질적으로 달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는 재원, 구체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전혀 받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실무 담당자들께서도 어떤 판단으로, 어떤 근거로 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느냐, 결국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다 쳐요. 그런데 결국 이것을 실행할 조직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아닙니까? 차관님, 어떠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목표 달성을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치로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치를 법제화 해야 된다는 찬성하는 입장입니까? 정말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중장기 목표……

○조지연 위원 수치화를 법제화해야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현재 결정에 있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지연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중장기 목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구체적 목표치를 수치화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입법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요. 그게 아까 선행 수준 이야기도 나왔었고 아니면 선행 수준을 통한 수치 목표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중장기 목표는 필요하다.

○조지연 위원 수치를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조지연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산업통상부에서도 수치화하는 것, 법제화하는 것 필요하다?

○산업통상부산업정책실장 박동일 저희는 법률에 입법적으로 넣으신다고 하면 숫자는 53이 이미 NDC로 발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지연 위원 그러면 53이 안 되면 어떤 겁니까, 안 됐을 때는?

○산업통상부산업정책실장 박동일 그러니까 저희 의견은 만약에 법률에 규정한다면……

○조지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53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부산업정책실장 박동일 그 부분은 저희는 53보다 더 높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계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처는 수치화하는 것, 법제화하는 것에 어떤 의견입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처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수치화 법제화는 헌법불합치 판정 때문에 해야 된다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수치화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2050년 탄소 넷제로를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은 최소한 생각해 보면 균등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정책.....

○조지연 위원 그러니까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

○기획예산처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그것은 헌법불합치가 나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재정경제부는요?

○재정경제부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치를 법제화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는 저희들도 같은 입장이고요. 다만 그 내용이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다소간에 유연성, 탄력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자료에 보면 검토의견을 주셨을 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아 달라라는 의견이 공통되는 것 같던데, 기재부도 그렇고 산업통상부도 그렇고요.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서를 거는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관계부처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정부 내 통합적으로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입장에서는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것은 목표에 대한 달성 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급적 유연성은 적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위원 그러면 부처 간은 어쨌든 조율이 안 된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조지연 위원 그러면 정부의 통합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니, 아까 전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관련해서 하시려면 정부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조지연 위원 아니, 이런 차원에서 정부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지금 3개의 부서에서는 단서조항은 어쨌든 달아야 된다는 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쨌든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주의고,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조지연 위원 그런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안을 가져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조지연 위원 아니, 저는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질의했는데.....

○소위원장 박지혜 가져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약속한 것.....

○소위원장 박지혜 그러니까 쟁점이 그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조지연 위원 그러니까 쟁점이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쨌든 정

부의 안을, 어쨌든 이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일을 해야 되는 주무 부서입니다. 주무 부서인데, 이것을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차원으로…… 그런 의지로 한다면 이게 도대체 진전이 있겠어요?

○이소영 위원 아니, 가져오겠다는 입장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조지연 위원 아니, 노력하겠다는 거고 해서 이게 되겠냐고.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 기후부는 조정하고 통합해서 가져오겠다는 입장이고 그게 안 됐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박지혜 예.

○이소영 위원 일단 첫 번째, 정부안을 가져올 수 있느냐, 저는 정부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는 이것을 정부한테 맡기지 말고 국회가 논의해서 책임 있게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거고, 이 의원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부안을 참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부안의 존재 자체가 우리한테 필수적이지 않다, 의원안을 조정해서 우리 국회가 얼마든지 입법할 수 있고 실제로 국회가 책임지고 입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재정경제부랑 기획예산처가 지금 구두로 답변하실 때는 현재 결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수치를 법제화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문서로 낸 의견에는 구체적인 수치로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 이렇게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지금 구두 의견하고 서면 의견이 다른데 이 서면 의견을 내실 때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려고 하면 현재 결정문 정도는 읽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결정 취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결정문 58쪽,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서 31년부터 49년까지 감축목표에 대해서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의회유보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다’ 이게 현재 결정이에요.

그 일단락에 뭐라고 돼 있는지 읽어 드릴까요?

‘31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 헌법 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규범인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된다’. 이런 결정이 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랑 재정경제부가 이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법제화하는 것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서면으로 내는 것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35년 목표에 대해서도 2035년 NDC가 53~61로 제출이 됐는데 그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가 부처 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정해서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나간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부든 재정경제부든 기획예산처든지 간에 53~61에 대해서는 굳건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수용과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53 이상은 어디에 부담이 되니까 53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2035년 NDC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산업부도 참여했고, 정부가 조정해서 그런 의견을 결정했으면 53~61 이 레인지 목표 자체가 정부의 입장이 돼야 되는 거지요. 산업부 입장은 다르고 기후부 입장은 다르

고, 어떻게 이렇게 법안소위에 의견을 제각기 가져올 수 있는지 저 이해가 안 되고요.

35년에 대해서 53~61로 했으니까 53으로 목표를 해야 된다……

제가 여쭙볼게요.

한국말인데 목표라는 단어의 개념이 뭐지요? 어떤 학생이 ‘제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목표는 100점을 맞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못해도 80점은 반드시 넘기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이 학생의 목표는 100점이 목표 아닌가요?

대한민국 정부가 ‘61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61을 지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못해도 규제수단을 동원해서 53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말에 있어서의 목표라고 하는 단어에 부합하는 숫자는 61인 거지요. 53은 규제를 동원해서 이것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최저한의 수준이고요. 국어사전에서도 지향점을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탄력적으로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달아 달라 이렇게 부처 의견을 냈는데, 지금 재정경제부 입장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탄력적일 수 있지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우리가 목표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또는 어떤 기술이 개발돼서 이게 용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일관되고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000만 명 이상의 국민들과 기업들과 관계부처들과 공무원들과 그 목표지향점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달려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고무줄처럼 고무줄을 늘이듯이 높였다가 낮췄다가 탄력적으로 하자고요? 그게 무슨 목표예요?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이종배 위원님 그다음에 김성희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관계부처 의견을 우리 수석이 받았나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예, 저희가 취합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관계부처가 여기 말고 국토부나 농식품부나 이런 데도 관계부처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필요하다면 앞으로 더 추가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종배 위원 그런 데는 안 받았어요?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저희가 기본적으로 회신이 오지 않은 부처에 대해서는 자료를 담지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보내기는 다 보냈어요? 보내기는 다 보냈고?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예, 기후부랑 상의해서 부처 의견을 다 여러 부처에서 받으려고 했고……

○소위원장 박지혜 의원입법이라서 전 부처에 다 회람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어쨌든 각 부처가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총괄은 기후부에서 하더라도 실행할 부처가 각 부처에서 실행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후부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낼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각 부처에서 바로 의견을 받도록 기후부에서 협의를 한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부처는 의견이 안 왔고.

어쨌든 기후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잘할 수 있겠는지 이것도 아직도 의심이 가는 측면도 있고요. 각 부처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잘 될지. 우리 법에 입법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 이루어질지 하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이종배 위원 지금 2018년도 대비해서 53~61%를 2035년도에 감축하자 이런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NDC 목표로 제출했습니다.

○이종배 위원 53~61%, 그렇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이종배 위원 그렇게 범위를 정한 것, 거기에 또 2050년도에 100% 탄소중립을 하자 이런 것, 100% 감축하자는 것들이 저는 이런 과학적인 배경 같은 것 또 각 부처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가고 있고요. 그렇게 그런 목표에 의문이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입법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계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못 들었는데 결국 산업계에서 나중에도 이행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행을 입법으로 강제하고 각 부처에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농식품부 얘기를 했는데, 농식품부의 가축 문제 이런 문제까지 연관이 다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무리하게 되면 경제나 산업이나 또는 고용 문제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의 큰 과제인데 현재의 결정이 아주 절대적인 결정으로서 먹고사는 문제 못 해도 좋다, 이런 것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건지……

현재의 결정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상황도 있고, 그때 당시의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것을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논의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 법안은 산업계의, 제가 산자중기위에 오래 있어 가지고 산업계의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제가 법안을 넣었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저는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 늦게 참여하게 돼 가지고 그간의 논의 과정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지금까지 명백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는 기후부가 지금까지 잘 못 했던 것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각 부처의 의견도 다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위원님,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35년 NDC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다양한 분석·평가 작업들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부처와 수차례 당정협의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목표치가 결정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공청회라든지 업계 간담회, 여기는 일반적인 산업계도 있고요. 탄소다배출 업종 그다음에 농림 부분, 관련된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도, 산업계도 충분하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2035 NDC 준비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일정 정도 중장기 목표에서도 헌법재판소결정도 고려해서 중장기 목표 또 어떤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논의가 있었다, 그런 작업은 거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지금 2026년도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의 우리 목표는 얼마예요? 2026년도, 연도별로 돼 있을 것 아니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연도별 목표치는 바로 확인해서, 수치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이종배 위원** 그리고 지금 얼마나, 몇 퍼센트 정도 이행이 됐어요, 그 목표의 몇 퍼센트? 100% 이행이 됐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지금 26년 치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어요. 25년과 관련해서는 25년 수준은 달성했는데 다만 부문별로 달성한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넘는 부분도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평균……

그게 있을 것 아니예요, 100% 다 달성했는지. 그냥 그렇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25년 수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잠정치로만 나와 있고요. 그 정확한 수치는 여름쯤 돼야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5년에 대해서는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딱딱 지금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종배 위원**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1년 됐어요. 1년 동안 그 전 정부보다 훨씬 더 노력해서 해 놓은 실적이 얼마, 몇 퍼센트, 수치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아니면 여기서 답변을 하시든지 자료를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지금 아마 2023년부터의 실적치는, 2023년은 잠정치 정도만 나와 있고요.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렇게 해서 과거보다 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35년도에 53% 이상도 할 수 있다는 무슨 기대치를 줘야지, 기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없이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입법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하나만……

이재명 정부가 작년에 임기를 시작했고요, 작년 한 중반 정도에. 그런데 작년의 온실가스 실적치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배출한 배출량에 대해서 기업들이 명세서를 올해 내는

거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 명세서를 제출받아서 인벤토리를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것은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중반 정도에…… 원래 매년 중반 정도에 그게 명세서를 기반으로 한 잠정치 인벤토리가 나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약 1년 반 내지 2년 정도 실적치는 후행해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지금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거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2023년까지의 목표치 달성 여부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이후……

○이종배 위원 제가 그 수치를 꼭 제시를 해 달라는 것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거라도 얘기를 해 달라는 거지 최종 정확한 정산하듯이 그런 수치를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지혜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그 말씀 하시니까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하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3년에 발표할 때 나왔던 자료를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27년까지 8%를 줄이고 나머지 3년에 25%를 몰아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너클볼 형으로. 맞지요, 여기까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예, 위로 볼록 상태로 해서요 후반기에 많이 줄이는 걸로 설계돼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위로 볼록이 아니라 너클볼이지요. 그냥 평균으로 가다가 3년 동안 신기술을 개발해서 갑자기 4분의 1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한 게 지금 정부잖아요.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든 방법인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엄청난 신기술을 2027년부터 만들어 갖고 3년 동안 4분의 1을 싹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게 정부잖아요. 맞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예, 맞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 당시에 환경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안 해 놓으면 너클볼부터 시작해서 커브…… 저희가 슬라이더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그냥 막 떨어질 수 있다, 갑자기 3년 안에 신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너무 태연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작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요즘 살을 빼느라 아침을 안 먹어 갖고 이 시간쯤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발언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부 부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주치의인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가 당뇨병에 걸렸으니까 꼭 식이도 바꾸고 운동을 해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국회에다가 구체적인 수치를 박아서 운동을 시켜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시는 말씀은 ‘아니, 그냥 뱃살만 좀 빼면 돼요. 우리가 다이어트가 좀 필요

한 상황입니다. 좀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사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발목을 자를 것 같은데, 그래서 큰일이 나게 생겼으니까 잘 좀 치료를 해라라고 얘기하고 정부에 던지면 ‘그렇게 까지 될 일도 아니고 그냥 배가 좀 나와서 보기에 흉한 건데 살 빼 보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오늘 2km 못 뛰면 내일로 미루어서 내일 3km 뛰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현실 인식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인 입법 권력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면 행정부가 좀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를 모르니까 오늘 안 해도 되고 내일로 미루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꾸 중국 얘기하니까 친중파처럼 몰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이것 시진핑한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기사를 읽고 말씀드린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2년에 일렉트로스테이트로 전환할 것을 당에서 결정하고 나서 아프리카 외교를 넓혔다는 거예요, 거기서 희토류랑 배터리 관련된 광물들 다 가져오려고. 그리고 대규모로 공대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박사학위 논문 수준을 올리려고.

그래서 2010년 당시에 중국 공대가 논문 랭킹 10위 안에, 그러니까 대학 랭킹 10위 안에 1개인가 2개 대학 들어 있었는데 지금 8개 대학이 중국 대학이에요. 그리고 미국 대학 2개 들어 있고 전 세계 특허 절반을 지금 중국이 내고 있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런 재생에너지 분야랑 산업을 키우고 있고, 게다가 사람 안 사는 저 안쪽 내륙지방에다가 태양광이니 풍력발전소니 잔뜩 지어 놓고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센터니 뭐니 관련된 산업을 그쪽으로 보내서 심지어 인구 소멸되는 지역의 인구 살리는 대책까지 같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체질을 개선해서 우리가 살을 빼고 당뇨병을 치료를 하고 나면 우리가 더 나아질 건데 지금 당장 단맛을 못 끊겠다라고 산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좀 맛있는 것을 먹고 운동은 내년부터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체질 개선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쭙보는 건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넷제로 안 할 것 같은가요, 지금 정부가 보시기에는? 유럽도 안 하고 대충 미국도 뭉갤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도 대충 이렇게 있어 보면서 상황 좀 보자, 중국만 열심히 하고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으니까, 막상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갔는데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 다 기름 써 갖고 산업 발전시키면 우리가 도태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수치를 자꾸 탄력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확신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넷제로라는 게 실천이 안 될 거고 탄소중립도 이렇게 하다가 유럽도 어려우니까 뭉갤 거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셔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때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너희들이 잘 모르고 법적으로 한 판단이니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라고 생각하시면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보내오신 결과보고서나 그다음에 질의서의 답변 내용을 죽 보면 ‘이것 넷제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너무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좀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

자'라고 제 눈에 읽히는데 차관님, 입장이 어떠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중국의 전기국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정부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부도 상당히 긴장감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서의 탄소중립에 대한 생각도 목표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 방법에 대해서 일정 정도 부처 간에 조율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김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지 당뇨병이 낫는다는 데 합의를 하면 내가 몸무게를 얼마큼 줄이겠다는 걸 법안에 박아서 해 놓고, 그 몸무게 달성이 안 되면 우리가 운동 코치라도 붙여 주고 안 되면 무슨 기구도 사 주고 약도 먹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안으로 수치가 정해져야 정부가 예산을 집어넣을 명분이 생기고 이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저희가 그 돈을 마련해서 산업계를 도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도 전 세계 3위인가요, 그렇지요? 물론 중국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진…… 아, 2위구나. 지금 2위에서 캐나다랑 2, 3위를 다투고 있는 중인 건데 이런 순위를 자꾸 올리려면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맞춘 수치를 정하고 그 수치를 달성을 못 하면 '아이고, 이러니까 큰일 났습니다'라고 법에서 얘기를 해야 우리가 관련된 예산을 만들어서 이런 분야의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저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지금 석유 쓰던 대로 쓰게 해 줘'라고 하면 그것은 마치 제가 단 게 먹고 싶으니까 계속 먹겠다고 말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수치를 정하는 것이 정말 산업계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관련된 부분에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정부가 국가 에너지 대전환 전기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론 반도체나 배터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놓고 가급적 줄이고 전기화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관계부처가 협업을 하는 방안들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제가 조금 쟁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기후부가 국제 행사가 있어서 이석을 하셔야 되고 또 저희가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간사 간 협의를 했는데요.

이현승 위원님.

○李憲昇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시기 전에 저도 의견 조금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알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경로가 정부 측, 의원입법이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결정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정부 측의 의견을 최대한 저희들이 또 수렴을 합니다. 정부 측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누군가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년 단위 NDC 설정에 관해 가지고 위원님들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 이데 제가 부처 의견을 한번 종합해 보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중

합 고려해 볼 때 선형 이상의 경로 설정이 필요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가지고 법률로 선형에 해당하는 하한선을 설정한 후에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적절하다. 예를 들면 35년까지 53%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관계부처, 산업통상부는 법률에 35년 목표를 규정해야 한다면 53~61% 레인지를 존중해 가지고 53%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산업부문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법률에 선형경로 이하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도 수치로 법제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선형경로 수준으로 법률에 규정할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정부에서 중장기 감축목표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서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다면 일단 기후부에서 제시한 대로 선형에 해당하는 하한선을 설정한 후에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조금 가감,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 목표를 조금 달성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목표를 오버해서 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60%가 목표라면 그 목표치의 플러스마이너스 5%, 그러면 3%가 되겠지요. 60에 3%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57~63 이런 레인지로 조항을 좀 달아 가지고 처리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발언 신청을 하셔 가지고 이소영 위원님 다음에 조지연 위원님, 서왕진 위원님……

○이소영 위원 제가 맨 마지막에 들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서왕진 위원 제가 아까 먼저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예, 죄송합니다.

○서왕진 위원 구체적인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문제인데요. 저는 현재의 결정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방식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제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할 몫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거고요. 특히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 이 부분이 윤리적 차원에서 미래세대한테 부담을 넘기지 말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선 당장 해야 될 일을 현실론을 근거로 해서 뒤로 미루고 미루었던 것이 오히려 그동안에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핵심 원인이기 때문에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 정책 자체가 정말로 진전을 만들어 내고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된다.

이 모든 부분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 왔던 탄소중립과 관련된 목표치를 정하는 거나 정책수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원칙들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산업부에서 나오신 분 답변 매우 실망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2050년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국가적으로 분명히 설정했는데 산업부 대답을 들어 보면 그 목표가 달성되든 말든 ‘지금 산업계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로 낮춰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목표로 설정한 2050 탄소중립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대충 뭉개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구상을…… 산업부가 그 어려움을 이야기, 대변하면서 산업부는 독자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나요? 산업부장관 불러서 저는 한번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안 지면서 ‘지금 산업계가 어렵다고 그러니다’ 이 이야기만 반복할 거면 정부의 한 축의 역할을 하기가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정책이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목표를 정할 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기준에 근거해서 계속 실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실현 가능성 중심으로 산업계한테 물어보고 ‘이만큼 할 수 있어, 없어?’, ‘이러면 부담돼, 안 돼?’ 이렇게 해서 정한 접근 때문에 그동안에 실패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로 책임져야 될 목표, 과학적 기준에 근거한 목표를 우선 설정해 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와 산업계, 모든 분야가 최선의 정책들을 다 추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특성이나 현실적 여건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정부의 어떤 책임성, 법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책임성 문제를 유연하게 고려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접근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조지연 위원님.

○조지연 위원 아까 전에 제가 각 부처별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소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서면과 구두가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의견 그냥 이렇게 의례적으로 주실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각 부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걸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정부안을 자꾸 요청드린 건 결국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여기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강제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실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따라와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준비가 안 됐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차관님.

그래서 각 부처 간 조율을 몇 번 하셨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조율을 더 해서 오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제2차관 이호현 예.

○소위원장 박지혜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아까 감축목표에 대해서 산업계의 부담 언급이 나왔는데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이 목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이견이 있지만 그 이견의 쟁점은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감축을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의 쟁점은 2026년의 산업계만 고려할 거냐 아니면 10년, 20년 후 산업계의 입장도 같이 고려

할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목 경로로 가면 지금 감축률은 높아지지만 2040년 이후의 감축률은 더 완만합니다. 1년에 감축해야 되는 감축률이 더 완만해집니다. 반대로 지금 덜 줄이게 되면 나중에 2040년 이후에는 1년 단위의 감축률이 더 급격해집니다, 커브가. 그러면 지금 2026년의 산업계의 부담을 더는 만큼 10년, 20년 후에 산업계의 부담은 더 커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1년만 해도 막 몇 %씩 줄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 산업부도 2026년의 산업계의 부담이나 입장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10년, 20년 후에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그 시대의 산업계에도 너무 큰 부담을 전가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더 과감한 감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산업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산업계에도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우리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통시적으로 봤을 때의 전체적인 감축 부담 자체를 축소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 쟁점 관련해서?

(「정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실 감축경로와 관련해서는 제출된 법안에 보면 법에 직접 수치를 규정한 법안이 2개가 있습니다. 정혜경 의원안과 서왕진 의원님 안이고요. 나머지 법안들은 사실 법에서는 지침을 주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시행령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일정 수준의 유연성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의……

지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정부 답변을 봐도 어려운 것이 국가목표가 부문별 감축목표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2040이나 2045에 대해서 산업구조나 경제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데 그에 대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하 나의 수치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런 난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040이나 2045 목표를 정할 때 사실 비용편익분석이나 의견 수렴, 충분히 저는 이루어져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법률안의 구조를 사실은 여러 부처에서도 이해를 하시고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시면 좋겠다, 소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지연 위원 이 부처 의견 다시 받아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래서 쟁점은 유연성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인데 지금 일단 법안에 일응 그런 부분들 립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러면 하한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지금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 위원 제가 저희 위원님들 말씀하시라고 웬만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참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후부도 그렇고 다른 부처들도 현재 판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 대강의 정량적 수준을 마련하라는 게 지금 법안에 나온 것처럼 숫자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선행인지…… 감축경로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가져오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후부를 제외하고는 선행인데 단서조항을 뒤서 좀 유연성을 가지게 해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를 할 립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지혜 그리고 제 말씀은 단서조항에 있어야만 유연성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김소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걸 고려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요청드렸었고 이 자료제출은 여기뿐만 아니라 기노위에서 2035년 NDC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부터도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그때도 자료는 안 왔어요. 그래서 2035년 NDC 할 때도 국회를 패싱한 채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만드시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론화 결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없다라고 여러 번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쪽의 입장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 주시고 그런 상황에서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지혜 그래서 감축경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법에 지침을 줄 것인가, 그 실제적인 부분에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금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고 정부 내에서도 또 논의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 법안소위를 한 번 더 개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제5차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성희 김소희 김정호 박지혜 서왕진 염태영 이소영 이종배 이현승 조지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박동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 이경수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차장 홍동곤